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용역업무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부산김해경전철(주)(이하 “발주자” 라 한다)와 계약체결 즉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장소에 사전 배치하여 용역업무 인수인계 및 계약기간 동안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종업원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전 종업원의 건강, 신원, 풍기 및 작업 규율의 유지, 안전사고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3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경비대장)는 타 경비원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특이사항에 대하여 관리부서와 관리담당자에게 신고하고 관리부서와 관리담당자의 요청사항을 계약상대자에 전달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업무연락 등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결원 보충)

계약상대자는 종업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제5조 (경비원의 복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측의 사전 동의를 얻어 종업원의 근무복을 정하여 전 종업원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경비업무에 필요한 모자, 곤봉, 손전등, 호루라기, 순찰시계, 가스분사기 등 경비와 관련한 일체의 장비를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근무자 실명제)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각 근무지(경비실)에 근무자의 명패를 게시토록 하고, 근무복에 명찰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규정 및 경비업무요령서 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에 의한 용역업무 개시와 동시에 종업원의 근무규정과 경비요령서를 발주자와 협의 작성하여 관리부서와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모든 근무 장소에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적정임금의 보장)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계약담당직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

야 하며, 이 경우 예정가격 산출내역을 기초로 한 직접노무비는 원가계산상의 금액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이하로 임의 감액 조치할 수 없다.

②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종업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계약 내역서상 임금에 대한 지급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직원의 증거서류 열람 또는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였을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월 지급하는 용역비에서 미지급 임금만큼 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원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급)

경비용역 인원에 결원(결근포함)이 있을 때에는 월 용역비 지급 시 결원(결근포함)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감하고 지급한다.

제11조 (도난시 변상 및 계약내용의 변경)

① 건물 내 모든 도난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서 및 경비요령서에 따라 사고발생 추정시간 동안의 경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고 변상하여야 하며, 미 변상시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용역비에서 차감한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경비대상 건물에 대한 도난사고 2회 이상 발생 및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당 건물에 대해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 측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용역범위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근무)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직원을 확보하여 계약개시일 이전에 전임 근무자와 2일 이상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 각 경비건물의 특성을 사전에 숙지시키는 등 경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기간 연장)

이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